

통 지 서

이계두 귀하

귀하께서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.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조언자로서 소송절차에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. 위와 같은 지위와 역할을 잘 인식하시고 각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지정에 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 등재기간 : 2025.01.01.부터 2026.12.31.까지

2025. 1. 10.

법원행정처장 천대엽



※ 유의사항 ※

1.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로 등재된 것만으로 바로 특정한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,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 소송에 대하여 전문심리위원을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에게 의사를 확인한 후 전문심리위원 지정·참여결정을 한 때에 비로소 그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됩니다.
2.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의 적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에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그 설명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.
3.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은 감정과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습니다.
4. 당사자는 전문심리위원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이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.
5. 양쪽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참여결정이 취소됩니다.
6.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,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.